
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

2022. 3.

동양대학교 간호대학

목 차

1. 개요	3
가. 목적	3
나. 적용범위	3
다. 사고대응 기본 지침	3
2. 학생 인권	4
가. 학생 인권 보장 원칙	4
나. 학생 인권의 종류	4
다. 실습 교육에 대한 학생 인권보호지침	4
라. 실험 · 실습실 인권 보호	5
3. 실습실 교육 안전관리	7
가. 사전 점검사항	7
나. 사고대응 프로세스	7
4. 임상실습 교육 안전관리	9
가. 사전 점검사항	9
나. 안전관리 주의사항	9
다. 감염관리 주의사항	9
라. 사고대응 프로세스	10
붙임 자료	12
[붙임 1] 비상연락망 체계	12
[붙임 2] 사고보고서	15
[붙임 3] 실험·실습실 일반안전수칙	16

1. 개요

가. 목적

실습 교육 및 교내·외 행사와 관련한 각종 학생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,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처리를 위한 준수 사항을 마련하여 동양대학교 간호대학(이하 학과)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

나. 적용범위

- 대상자 범위
 - 동양대학교 간호대학 재학생
- 사례 범위
 - 교내 실습 교육 안전사고
 - 임상 실습 교육 안전사고
 - 교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(골절, 타박상, 낙상, 폭행 등)
 - 교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학생 자체 행사 안전사고
(축제, 신입생 OT, 체육대회, 동아리 활동 등)

다. 사고대응 기본 지침

-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
- 피해 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
- 대외 언론과의 접촉은 입학홍보처로 단일화할 것
- 사고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신속히 보고할 것
-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(소방서, 경찰서 등)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할 것

2. 학생 인권

본 사항은 본교 「인권센터 규정」에 의거함

가. 학생 인권 보장 원칙

- 학생 인권은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며, 모든 교육 및 실습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함
- 학생은 실습 및 학업 과정에서 차별, 폭력, 부당한 대우 없이 존중 받아야 하며,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를 가짐
- 실습 및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신체적 · 정신적 안전이 보호되어야 하며,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됨
- 학생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,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이를 자유롭게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함
- 학교 및 실습기관은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명확한 지침과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,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함

나. 학생 인권의 종류

- 의사표현의 자유
- 자치활동의 권리
- 양심 · 종교의 자유
- 차별받지 않을 권리
-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
-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안전
-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

다. 실습 교육에 대한 학생 인권보호지침

- 학생의 기본권을 존중하며, 모든 실습 과정에서 신체적 · 정신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함
- 학과는 학생들에게 실습 교육 시작 전에 인권교육을 수행함

- 학과는 학생들에게 실습 가능한 범위를 고지하여 해당 교육에서 무엇을 학습하고 수행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함
- 학생은 실습 교육 중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
- 학생은 실습 중 실습기관의 직원이나 대상자, 보호자 등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받으면 당사자에게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즉시 임상실습현장지도자와 실습지도교원에게 보고함
- 실습지도교원은 학생이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임상실습현장지도자와 조치사항을 협의하고 협의내용을 학과장에게 보고함
- 학과장은 학장에게 보고하고 협의내용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학 본부에 보고한 후 해당 실습기관과 후속조치를 협의함
- 학생 또는 대리인이 인권침해 사안 처리를 원하는 경우 본교 「인권센터 규정」에 따라 인권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

※ 참고: [붙임 1] 비상연락망 체계

라. 실험 · 실습실 인권 보호

1) 실습 환경에서의 인권 보호

- ① 존중과 배려: 모든 학생은 동등한 학습 기회를 가지며,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실습에 참여해야 한다.
- ② 자율성 보장: 실습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원하지 않는 활동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존중한다.
- ③ 신체적 · 정신적 안전 보장: 실습 과정에서 신체적, 정신적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며, 필요 시 즉시 담당교원에게 보고한다.

2) 개인정보 및 신체적 접촉 관련 내용

① 개인정보 보호

- 학생의 건강 상태, 실습 기록 등 개인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유되지 않는다.
- 실습 중 촬영(사진, 동영상) 및 녹음은 금지되며, 필요 시 담당

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신체적 접촉 관련 유의 사항

- 실습 중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구하고,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한다.
- 실습 대상자(동료 학생)가 불편함을 표현할 경우 즉시 중단한다.
- 민감한 부위(가슴, 생식기 등)에 대한 실습은 모형을 활용한다.
- 학생은 침습적인 또는 비침습적인 실습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.

3)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응 방안

① 부적절한 언행 및 강요 금지

- 실습 중 비하, 조롱, 모욕적인 언행을 금하며,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.
- 실습 참여 여부는 자율성을 보장하며, 거부 의사를 표현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.

② 불편한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

- 실습 중 신체적, 정신적 불편함을 느낄 경우 즉시 담당 과목 교수 또는 지도교수 알린다.
-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교내 인권센터 또는 지도교수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한다.

3. 실습실 교육 안전관리

본 사항은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및 본교 「연구실 안전관리 규정」, 학과 「간호학과 실습교육 운영세칙」에 의거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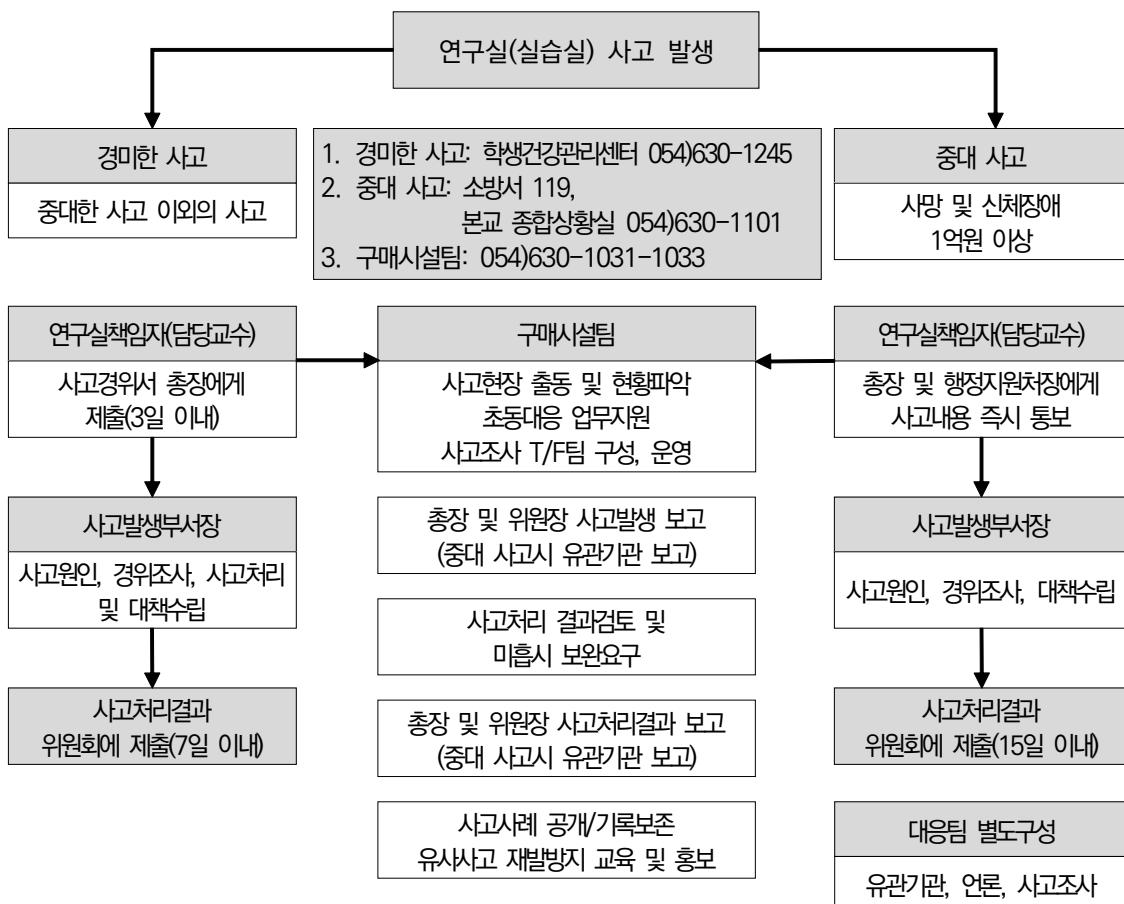
가. 사전 점검사항

- 실습학생, 실습실 관련자와 교육자는 인권교육(차별, 사생활과 개인 정보의 노출, 표현, 종교 등)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(상해, 사고, 성폭력 문제 등)을 이수함
- 실습실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적당한 장소에 비상연락망 및 사고대응 프로세스 설치함
- 사용한 기자재는 실습이 종료된 후에 점검하여 보관함
- 실습실 담당교수 및 직원은 실습실 사용일지 작성함

나. 사고대응 프로세스

실습실 교육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교 「연구실 안전관리 규정」에 따라 아래의 <그림1> 사고대응 프로세스 체계를 준수함

〈그림 1〉 연구실(실습실) 교육을 위한 사고대응 프로세스



※ 참고: 본교 「연구실 안전관리 규정」의 [별지 제7호 서식]

용어정의1)

중대 사고: 실습과정에서 위험 물질의 누출, 화재, 폭발 등이 발생하여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거나 사망 또는 신체 중상과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실습 중 사고를 말하며,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구성원이나 실습 환경에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를 말함.

용어정의2)

경미한 사고: 중대한 사고를 제외한 사고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작은 사고를 총칭함.

4. 임상실습 교육 안전관리

본 사항은 「고등교육법」과 「간호학과 실습교육 운영세칙」에 의거함

가. 사전 점검사항

- 학교는 실습생 및 실습지도교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(차별,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노출, 표현, 종교 등)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(상해, 사고, 성폭력 문제 등)을 수행함
- 학교는 임상실습 교육 전에 실습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함
- 학생은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결과를 교육 시작 한 달 전까지 학과사무실 임상실습 담당 직원 및 조교에게 제출함

나. 안전관리 주의사항

- 유해물질, 혈액, 화학약품, 항암제 등에 노출되거나 낙상,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임상실습현장지도자에게 보고하여 병원 규정에 따라 처리함
-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면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함(예: 바닥의 물기, 화기 등)
- 검사실 방문 시 해당 검사실의 안전수칙과 지시사항을 숙지함 (예: 영상의학과, 혈관조영실의 방사선 피폭 방지용 특수가운 착용)
- 환자안전을 위해 정확하게 환자를 확인함. 동명 2인, 유사한 이름에 주의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지표(예: 성명, 생년월일 등)와 개방형 질문을 활용함

다. 감염관리 주의사항

- 손 위생, 기침예절, 무균술 준수 등 철저한 감염방역관리 수행함
- 주사침 찔림이나 날카로운 기구 베임, 눈·코·입의 점막이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되는 것 등에 주의함

- 격리병실 출입 시 개인보호구 착용과 제거 준수. 특히, 공기매개 감염질환자의 격리병실 출입은 최대한 자제하고, 부득이 출입할 경우 주의지침을 숙지하여 개인보호장구 착용 상태에서 출입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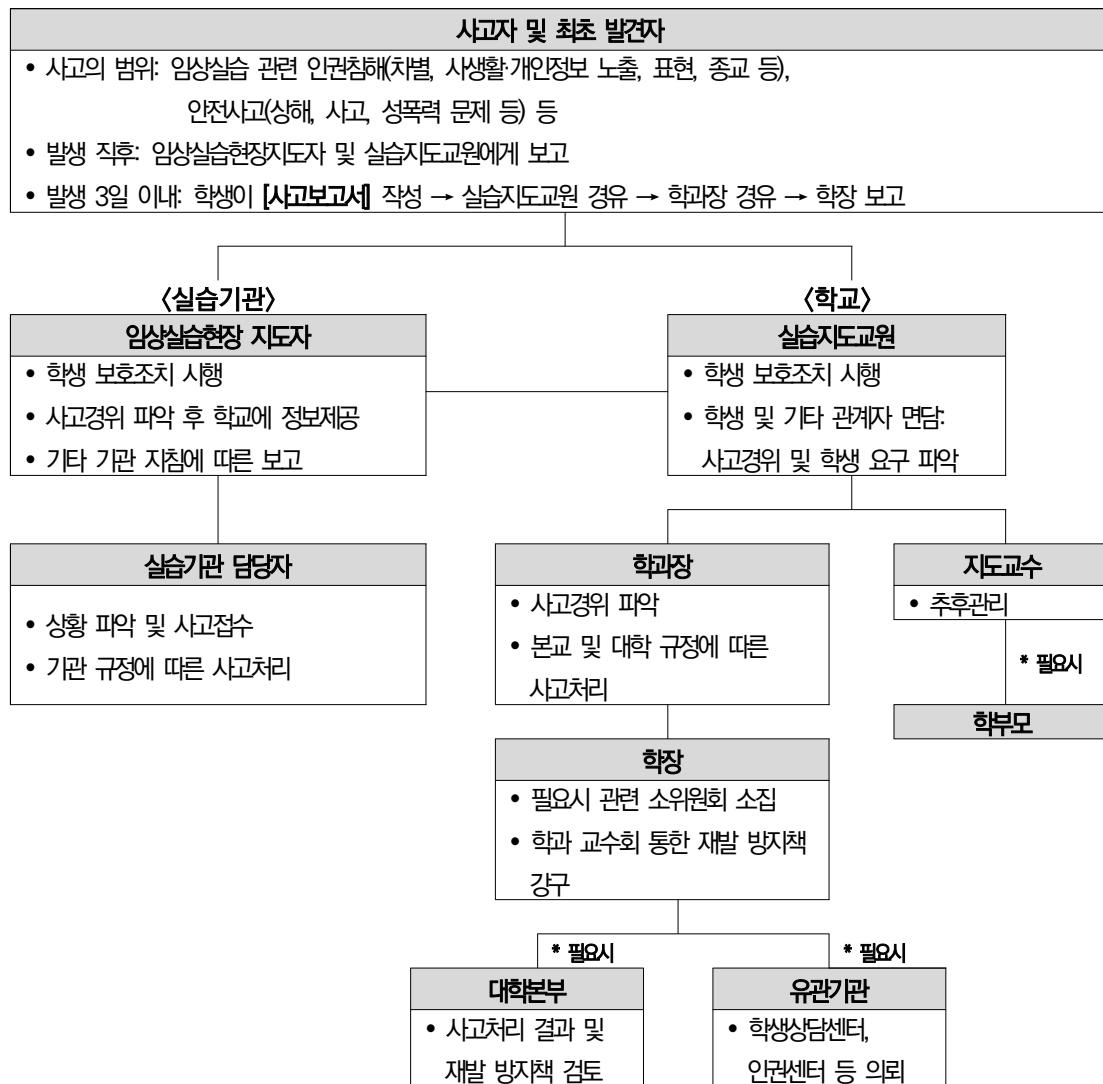
※ 정의(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92조 제1항, 제2항)

- 혈액매개 감염병: 인간면역결핍증, B형간염 및 C형간염, 매독 등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하여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병
- 공기매개 감염병: 결핵, 수두, 홍역 등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
- 감염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하여 병원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임상실습현장지도자 및 실습지도교원에게 보고함
- 실습생이 감기, 독감, 피부질환, 각종 유행성 감염병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역격리 환자 병실에 출입을 금함
- 폐기물관리 준수: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[별표 2]에 따라 주사기, 주사바늘, 알코올 솜, 수액세트 등을 철저하게 분리수거함
- 실습 복장: 안전, 청결 유지, 오염 최소화, 술기 수월성 등을 고려하여 실습교육 환경에 적절한 범위 안에서 준비함

라. 사고대응 프로세스

- 임상실습 교육 관련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<그림2>의 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준수함
- 학생은 임상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임상실습 현장지도자와 지도교원에게 연락함

〈그림 2〉 임상실습 교육을 위한 사고대응 프로세스



※ 참고: [붙임 1] 비상연락망 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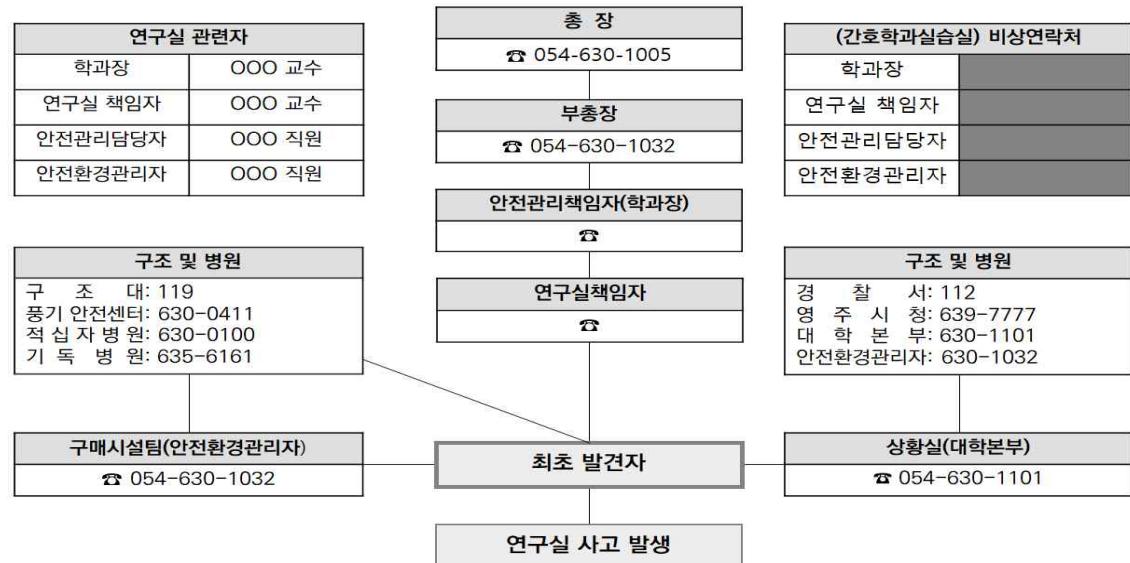
※ 참고: [붙임 2] 사고보고서

※ 참고: [붙임 3] 실험·실습실 일반안전수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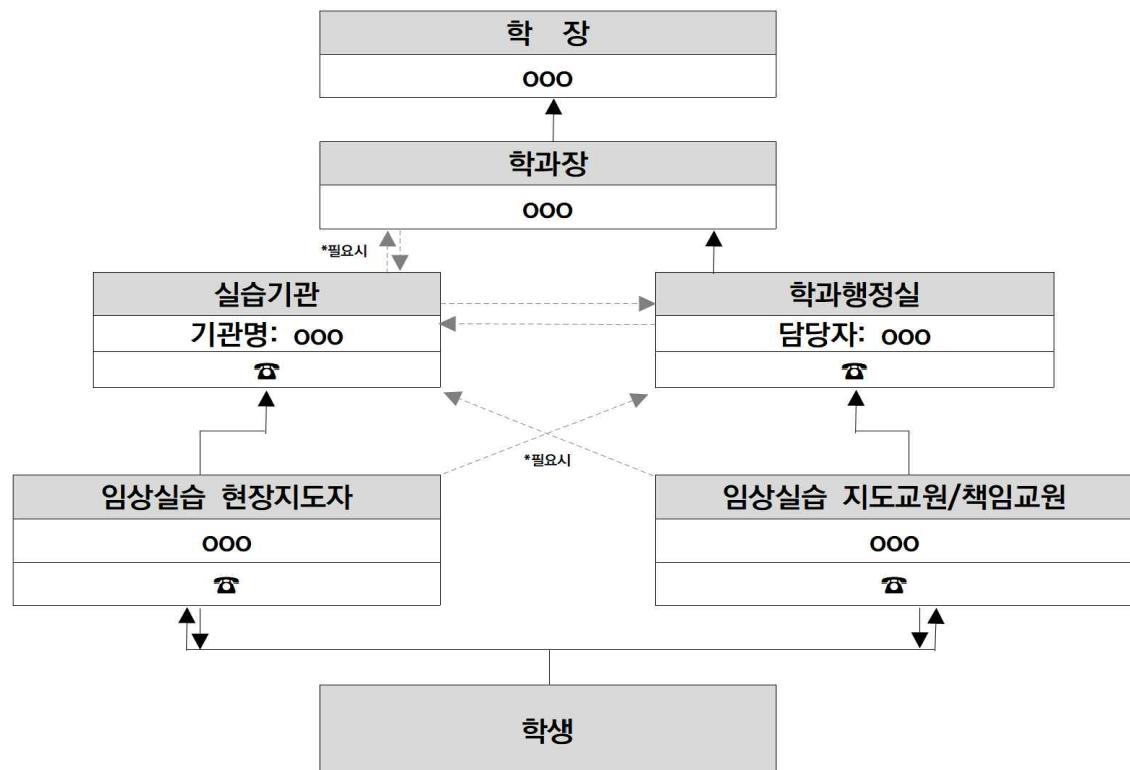
[붙임 1]

비상연락망 체계

1. 연구실(실습실) 교육 비상연락망 체계



2. 임상실습 비상연락망 체계



※ 별첨: 간호학과 교수 및 행정지원인력 연락처

교수 성명	담당	연구실	연구실 전화		
박혜숙	여성건강간호학실습	사임당관 202호	054)630-1375		
김경덕	성인간호학실습	사임당관 213호	054)630-1373		
이숙경	간호관리학실습	사임당관 205호	054)630-1372		
이상미 (학장)	아동간호학실습	사임당관 204호	054)630-1712		
김주연	노인간호학실습, 성인간호학실습	사임당관 208호	054)630-1722		
한명희	기본간호학실습	사임당관 203호	054)630-1279		
엄연주 (학과장)	지역사회간호학실습	사임당관 206호	054)630-1723		
안수민	건강사정실습, 종합실습, VR시뮬레이션	사임당관 212호	054)630-1824		
김설빈	정신간호학실습	사임당관 209호	054)630-1209		
조정애	여성건강간호학실습	사임당관 201호	054)630-1283		
송희원	기본간호학실습, 종합실습	사임당관 214호	054)630-1150		
행정지원인력 성명	담당	사무실	사무실 전화		
서진아	행정	신재관 1421호	054)630-1374		
남경은	실습				
채민정					

2. 교내 관련 행정부서 및 유관기관(가나다 순)

교내 관련 행정부서명	연락처
구매시설팀	054)630-1031~3, 1232~3
인권센터	054)630-1323~4
장애학생지원센터	054)630-1022
종합상황실	054)630-1101
취업학생처 장학복지팀	054)630-1022~4, 1177
취업학생처 취업지원팀	054)630-1037
학생건강관리센터	054)630-1245
학생상담센터	054)630-1170
유관기관명	연락처
경찰서/소방서	112/119
영주경찰서 풍기파출소	054)636-2112
영주기독병원	054)635-6161
영주보건소	054)631-4000
영주소방서 풍기119안전센터	054)636-2119
영주시청	054)639-7777(민원콜센터), 6222(당직실)
영주적십자병원	054)630-0100
풍기보건지소	054)636-6503
한국가스안전공사	053)850-1900(대구경북지역본부)

[붙임 2]



20 학년도 학기
사고보고서

동양대학교

학년	학번	이름	
실습기관(병동)		실습과목	
실습기간			
사고일시	20 시 분	사고장소	
사고내용 (육하원칙에 근거 구체적으로 작성, 별지 작성 가능)			
사고처리 결과			
20 년 월 일			
작성자: (인)			
임상실습현장지도자: (인)			
실습지도교원: (인)			
결재	실습 지도교원	학과장	학장

실험·실습실 일반안전수칙

실험·실습실 일반안전수칙

- 1 각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은 반드시 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실험·실습자는 실험·실습 시작 전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, 적절한 안전관련 보호장비를 착용하고, 실험·실습을 수행할 것
- 2 실험·실습실에서 원칙적으로 침식할 수 없음
- 3 실험·실습실에서는 금연, 정숙, 청결, 정리정돈을 유지하여야 할 것
- 4 실험·실습실에서는 난방용 전열기구 및 가스기구(실험용 가스기구는 제외) 등을 사용할 수 없음
- 5 실험·실습자는 실험·실습중에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되며, 부득이 이탈할 경우 안전관리자의 허락을 받아 안전수칙을 숙지시킨 대리인을 두어야 함
- 6 실험장치의 가동중에는 정비 및 청소를 하지 말 것
- 7 실험장치용 장비의 밸브는 서서히 열고 서서히 잠그도록 할 것
- 8 가연물질은 진행중인 실험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보관할 것
- 9 모든 실험장치는 담당자 이외에는 손대지 말 것
- 10 폭발물이나 스파크 등이 발생하는 위험한 실험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입회 하에 실험 토록 할 것
- 11 실험장치 사용의 제한사항은 반드시 준수할 것
- 12 인화성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실에는 화기 엄금토록 하며, 구급 및 소방장비 유지에 철저를 기할 것(소화기, 화재경보장치, 구급약품 등)
- 13 인화성물질(유류, 가스 등)은 공기유통이 잘 되고 사람의 접근이 많은 곳에서 격리시켜 보관하고, 통제구역표시를 할 것
- 14 통제구역은 허가 없이 출입하지 말 것이며, 출입 필요시에는 통제구역 안전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반드시 득할 것
- 15 실험실 최종 퇴실자는 전기기구의 전원차단, 인화성물질 격리, 위험물의 안전한 정리 정돈, 잠금장치 등을 확인할 것

비상연락망	소 방 서	119	영주소방서	637-5119
	사설지원과	630-1032	보건진료소	630-1245
	안전관리자(정)		안전관리자(부)	